

	<h2 style="margin: 0;">선교위원회규정</h2>	규정번호	3-8-22
		제정일자	2005.03.01.
		개정일자	2011.09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교목실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대학 선교의 활성화와 교직원의 신앙생활을 위한 선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대학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
3. 교직원 신앙생활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 복음화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8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목실에서 담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